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69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윤종균 · 한민수 · 맹성규
황명선 · 임오경 · 한준호
강준현 · 장종태 · 부승찬
김태선 · 이광희 · 김병주
서미화 · 전진숙 · 소병훈
안태준 · 문금주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철도사업법」 제28조)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표지(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인증 신청과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표창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함으로써 철도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음.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별도로 운영

중에 있으나 목적·기준·대상이 중복되며,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 있어 2025. 11. 28.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도 폐지를 결정한 바도 있으므로, 중복되는 제도의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삭제 및 제49조제3항 개정).

법률 제 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3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8조(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①</u> <u>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u> <u>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u> <u>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u> <u>에서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u> <u>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철도서비</u> <u>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u> <u>철도사업자는 그 인증의 내용을</u> <u>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서비</u> <u>스마크”라 한다)를 철도차량, 역</u> <u>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u> <u>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u> <u>다.</u> <u>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u> <u>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또</u> <u>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u> <u>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u> <u>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u> <u>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④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의 절</u> <u>차, 인증기준, 우수서비스마크,</u> <u>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u> <u>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u>	<u><삭 제></u>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평가·연구 등의 업무와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29조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삭 제>

<삭 제>

제49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3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 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 고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 나 변경한 자 2. 삭 제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 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 한 표지를 철도차량 등에 붙 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한 자	<u>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 경한 -----.</u> <u><삭 제></u> <u><삭 제></u>
--	---